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요 FAQ(3.29일)

I 지원 대상

1.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?

- 지원대상은 **집합금지(지속, 완화)·영업제한, 일반업종(경영위기, 매출감소)**으로 구분됩니다.
- (**집합금지**) 중대본·지자체가 '20.11.24 ~ '21.2.14.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.
 -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(지속)와 6주 미만인 경우(완화)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.
- (**영업제한**) 중대본·지자체가 '20.11.24 ~ '21.2.14.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'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.
- (**일반업종**)
 - (**경영위기**)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'19년 대비 '20년에 20%이상 감소한 업종이며,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.
 - 매출감소율 구간 : 20% 이상 40% 미만, 40% 이상 60% 미만, 60% 이상
 - (**매출감소**) '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%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.

<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>

구 분	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지원금액
집합금지	지속 (6주 이상)	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* 이하	무관	500만원
	완화 (6주 미만)		무관	400만원
영업제한			감소	300만원
일반업종	경영위기		60% 이상	300만원
			40% 이상 ~ 60% 미만	250만원
			20% 이상 ~ 40% 미만	200만원
매출감소		연 매출액 10억원 이하	20% 미만	100만원

* (10억원) 숙박·음식, 교육서비스업, (30억원) 부동산업 (50억원) 도소매업, (80억원) 광·농·임·어업 (120억원) 제조업

< 참 고 >

① 집합금지(지속/완화)

구 분	수도권	비수도권
집합금지 (지속)	유흥업소(5종), 홀덤펍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스탠딩공연장	유흥업소(5종), 홀덤펍
집합금지 (완화)	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 학원·교습소,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	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

② 영업제한

구 분	수도권	비수도권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숙박업 이·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	식당·카페, 숙박업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

2.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?

- 여행업 등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'경영위기업종'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.
-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'19년 대비 '20년에 20% 이상 감소한 "10개 분야 112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"이 대상입니다.

구 분 (매출액 감소율)	해당 업종 (개)	업종 예시	지원금
60% 이상	5	여행사업, 영화관 운영업	300만원
40% 이상 ~ 60% 미만	23	공연시설 운영업,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, 예식장업	250만원
20% 이상 ~ 40% 미만	84	전세버스 운송업, 이용업	200만원
소 계	112	-	-

붙임

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

□ 세세분류 기준 : 112개 세세분류업종

분야	업종	분야	업종	분야	업종
광·음업 (34개)	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	생활용품 (5개)	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	영화·출판·공연 (16개)	기타 인쇄물 출판업
	맥아 및 맥주 제조업		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	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	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		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	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
	모 방적업		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		영화관 운영업
	기타 방적업		화장품,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	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	면직물 직조업	면세점	사진 처리업		
	모직물 직조업	기념품,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	
	화학섬유직물 직조업	여행사업	서적 임대업		
	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	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	공연시설 운영업		
	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	박물관 운영업	연극단체		
	한복 제조업	사적지 관리 운영업	무용 및 음악단체		
	모피제품 제조업	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	공연 예술가		
	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	자연공원 운영업	공연 기획업		
	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	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	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		
	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	철도 여객 운송업	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		
	기타 가죽제품 제조업	도시철도 운송업	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		
	신발 부분품 제조업	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	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		
	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	전세버스 운송업	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		
	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	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	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		
	원유 정제처리업	외항 여객 운송업	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		
	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	항만 내 여객 운송업	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		
	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	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	전자 게임장 운영업		
	합금철 제조업	항공 여객 운송업	컴퓨터 게임방 운영업		
	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	항공 화물 운송업	기타 오락장 운영업		
	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	공항 운영업	기원 운영업		
	발광 다이오드 제조업	기타 스포츠 교육기관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		
	전자카드 제조업	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	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		
	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	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	호텔업		
	일차전지 제조업	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	여관업		
	금속 성형기계 제조업	보육시설 운영업	휴양 콘도 운영업		
	산업용 섬유 세척, 염색,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	독서실 운영업	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		
	강선 건조업	유사 의료업	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	
	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	이용업	예식장업		
	항공기용 엔진 제조업	피부 미용업	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		
남자용 겔옷 소매업	기타 미용업				
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	욕탕업				
기타 의복 소매업	마사지업				
신발 소매업	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			
의류 임대업	산업용 세탁업				
		오락·스포츠 (10개)			
		기타 (8개)			

* 녹색 : 감소율 60% 이상(5개) 황색 : 40% 이상 60% 미만(23개) 흰색 : 20% 이상 40% 미만 (84개)

3.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?

□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단,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.

-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연간 매출액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
9. 1차 금속 제조업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
12. 전기장비 제조업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
15. 가구 제조업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
17. 수도업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
19. 광업	
20. 담배 제조업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
29. 건설업	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
31. 금융 및 보험업	
32. 도매 및 소매업	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1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
41. 교육 서비스업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

4.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<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>

개업 시기 ^①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
		기준	비교
~'19년말	'19년 또는 '20년 신고매출액	'19년 신고매출액	'20년 신고매출액
'20.1~11월	'20년 신고매출액 또는 '20.9월 ^② ~ '21.1월 월평균 매출액	'20.9월 ^② ~ 11월 월평균 매출액	'20.12월 ~ '21.1월 월평균 매출액
'20.12월~'21.2월	개업월 ~ '21.3월 ^③ 월평균 매출액	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	

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(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) 환산하여 적용
(예: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→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)

② '20.9월~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

③ 신용·체크카드 결제액, 현금영수증 발급액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

※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

5. '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나요?

□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'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
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.

* 버팀목자금은 '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

○ 매출액 규모는 '21.3월까지의 월별매출액*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
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.

*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, 현금영수증 발급액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

6.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?

□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
아닙니다.

○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'20년도 부
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
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.

7.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?

- 영업시간 단축,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,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20.11.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II

지원 금액 및 일정

8.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?

-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(최대 1천만원)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
-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를 합하여 결정됩니다.

* 예1) 500만원, 300만원인 경우 = 650만원 (500만원×100% + 300만원×50%)

예2) 400만원, 100만원, 100만원인 경우

= 480만원 (400만원×100% + 100만원×50% + 100만원×30%)

9.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- 신속지급의 경우,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.
-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,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,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.
-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. 즉,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,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.
- 확인지급의 경우, 증빙서류 확인,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,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~ 3주 정도 소요됩니다.

10. 문자도 못받고,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.

-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'20.12월 ~ '21.2월이거나,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,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, ②개업일이 '20.12월 ~ '21.2월,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